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권리*

서 윤 호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국문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이주사회'로 바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는 주로 주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손님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묻고 있는 물음의 지평은 이렇다. 우리 사회에 타자로서 새롭게 나타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이주사회에서 요구되는 환대의 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지금까지 경계를 잘 유지해온 정주자의 관점에서 이주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탈경계의 이주사회의 관점에서 이와는 다른 방식의 물음을 제기한다. '타자의 권리'로서 이주자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환대의 권리'는 불가능한가? 상대방의 호의와 윤리에 기초를 둔 불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강한 주장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로서 환대를 다룰 수 있는가? 환대의 권리는 사회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성원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 있는 '성원권'의 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이 라는 형태로 다뤄온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가 이주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벤하비브와 왈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II). 이어서 칸트의 조건적 환대와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권리로서의 '환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III), 마지막으로 인정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환대권의 재구성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IV).

주제어 : 이주사회, 환대, 성원권, 인정이론, 벤하비브, 왈저, 칸트, 데리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776)

1. 서론: 이주사회의 문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이주사회로 바뀌고 있다. 먼 곳이 가까워지고 가까운 곳이 멀어지고 있다. ‘이주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의 시대를 규정하는 ‘이주의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¹⁾ ‘전지구적 노마드화’라는 말을 이제 우리 사회도 실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사회에서는 많은 것이 기존의 경계를 넘게 된다. 이른바 ‘탈경계’의 사유와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도 크게 흔들린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문제이다. 그것도 ‘권리’로서의 환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²⁾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주인의 관점에서 손님과 객으로서 이주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묻고 있는 물음의 지평은 이렇다. 우리 사회에 타자로서 새롭게 나타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이주사회에서 요구되는 환대의 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지금까지 경계를 잘 유지해온 정주자의 관점에서 이주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다른 방식의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타자의 권리’로서 이주자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환대의 권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환대는 ‘윤리’의 차원을 넘어 과연 ‘권리’의 차원에서도 주장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권리’로서의 환대란 무엇을 말하는가? 상대방의 호의와 윤리에 기초를 둔 불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강한 주장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로써 환대를 다룰 수 있는가? 환대의 권리는 사회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성원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만약 이러한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이 가능하다면, 이주인권이라는 우리 사회가

1) 스티븐 카슬 외,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참조.

2) 이는 ‘타자의 권리’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자세한 것은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철학과 현실사, 2008 참조.

마주하고 있는 현안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환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 있는 ‘성원권’의 문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다뤄온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가 이주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벤하비브와 왈저의 논의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II). 이어서 권리로서의 ‘환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칸트와 데리다의 논의를 통해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III). 마지막으로 환대권의 재구성 가능성을 인정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IV).

II. 이주사회에서의 성원권 문제

김현경은 『사람·장소·환대』에서 ‘성원권’과 관련하여 ‘환대’의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³⁾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김현경은 환대의 개념을 성원권의 전제조건으로서 파악한다. 그 경우 성원권은 보편적 인권의 개념 자체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성원권’은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파악된다. 이는 실상 보편적 ‘인권’ 개념과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편인권 개념과 커다란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성원권 개념을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도덕적 요청의 차원에서만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보편적 인권 개념에 기초한 광의의 성원권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의 개념으로 성원권을 더 구체화해야만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이론적 개념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주로 이주자의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로 다루지고 있다.

3) 자세한 것은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57쪽 이하 참조.

근대 민족국가는 전통적으로 국적과 시민권이라는 법적 범주를 통해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급격하게 이주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들 국적 또는 시민권 개념은 점차 낡은 개념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요소들로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자기입법 개념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정치적 성원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입장이 새로운 이주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진지하게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사회에서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는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는가? 이는 현대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성원권을 둘러싸고 있는 두 사람의 이론적 입장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하비브와 왈저의 논의가 그것이다.

벤하비브는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를 무엇보다 보편인권의 핵심 주제로 파악한다.⁴⁾ 그에 따르면 성원권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일정한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한다.⁵⁾ 이것은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역설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세계는 초국가적인 자본과 금융의 등장, 경제적 세계화 및 노동시장의 유동성 강화와 더불어 초국가적 정치행위자 뿐만 아니라 하위국가적 정치행위자들도 함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민족국가와 국경 및 영토 개념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선불리 국가체제의 종말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군사, 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주권이 가졌던 힘이 대부분 와해되고 그와 함께 국경이 수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무분별한 이주자들의 도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⁶⁾

벤하비브는 바로 이러한 급격한 새로운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적

4) 자세한 것은 서윤호,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 벤하비브의 논의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58집, 2014 참조.

5) 벤하비브, 위의 책, 72쪽 참조.

6) 이철우는 이 문제를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로 표현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철우,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제42집 1호, 2008 참조.

성원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보편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을 단지 규범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벤하비브는 한편으로는 인권에 내재하는 포괄적인 도덕적 및 정치적 보편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에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이고 배타적인 민주적 제한이라는 두 개의 요소 사이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간극을 하버마스 식의 담론이론을 통해 서로 상호규정하고 재의미화 함으로써 현대 입헌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시도한다.⁷⁾

벤하비브는 맥락초월적인 입헌적 국제규범의 정립과 민주적 다수 의지가 서로 어떻게 매개되고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데리다의 반추(iteration) 개념을 끌어들이며 민주적 반추과정을 제안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자가 비록 배제와 포함의 규칙 그 자체를 정하는 데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다중적인 민주적 반추과정을 거친다면 이러한 간극과 차이를 협상 가능한 것으로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벤하비브는 주장한다.⁸⁾ 다시 말해 벤하비브는 공적인 형태의 토론과 속고 및 학습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들로 구성되는 민주적 반추과정을 통해 보편인권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법 제도와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맥락화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 벤하비브는 전 세계적 맥락에서 이러한 민주적 반추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권에 관한 정책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일방적인 자기규정의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적 맥락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다국 간의 결정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주권은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자기 지시적인 개념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주권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또 벤하비브는 민주적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입헌적 자기창조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여, 민주적 반추과정을 통해 시

7) 벤하비브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와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이론의 관점을 그 이론적 기초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벤하비브, 위의 책, 35 쪽 이하 참조.

8) ‘민주적 반추’ 개념에 대해서는 벤하비브, 위의 책, 209쪽 이하, 그리고 하용삼, 「타자의 권리에 대한 민주적 반추」, 『로컬리티 인문학』 제4호, 2010 참조.

민과 이방인, 우리와 타자 사이의 구분을 협상 가능한 것으로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탈형이상학적, 탈민족국가적, 세계시민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와 같은 세계시민적 연대 아래에서 모든 인류는 오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보편적 권리의 보호망 아래 놓일 수 있게 되며, 그 때에야 비로소 성원권이 라는 배제적 특권도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벤하비브는 성원권의 문제를 보편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벤하비브의 주장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⁹⁾ 그러나 벤하비브가 주장하는 보편인권으로서의 성원권이 취하고 있는 이론적 기초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비판의 지점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을 철학적 기초로 삼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하버마스의 철학적 입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 고스란히 그에게도 적용된다. 벤하비브는 의사소통적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은 보편인권으로서의 성원권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성원권과 시민권 박탈에 대한 금지도 또한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그러나 벤하비브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원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개인주의를 기초로 삼고 있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¹¹⁾ 따라서 사회계약론의 관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몇 군데 눈에 띄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벤하비브의 이론적 논의는 전반적으로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벤하비브는 국경을 허물자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난민과 망명객에 대해서는 임시 입국권을 허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임시 입국에서부터 정회원이 되는 모든 과정

9) 이와 같은 내용들을 논증하기 위해 『타자의 권리』에서 벤하비브는 칸트의 ‘환대의 권리’와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그리고 롤즈의 『만민법』과 세계정의론자들의 여러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 포기(T. Pogge), 바이츠(C. Beitz)와 같은 지구정의론자들도 국경을 넘어서까지 정의의 문제를 주장하는 점에서 롤즈보다는 앞서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지구촌 분배정의라는 관점에서만 이주활동을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10) 벤하비브, 위의 책, 166쪽.

11) 벤하비브, 위의 책, 168쪽.

을 규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귀화에 관한 법은 인권규범과 일치해야 하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거나 시민권 획득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벤하비브와는 반대로 왈저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물론 왈저의 주장도 그 현실적인 결과에서는 벤하비브의 주장과 실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성원권을 다룸에 있어 왈저가 취하고 있는 이론적인 접근방식은 벤하비브와는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¹²⁾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왈저는 자신만의 독특한 ‘다원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¹³⁾ 왈저는 다원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¹⁴⁾ 그에 따르면, 인간이란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환경으로 이동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거주지나 시민권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한다. 그 경우 국가의 시민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입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가입을 허용해야만 하는가? 지원자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성원권을 분배하는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가? 왈저는 그의 방법론적 특수주의라는 방식으로 이러한 성원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접근하고자 한다.

왈저에 의하면, 성원권은 구성원들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하는 ‘내적 원칙’

12) 자세한 것은 서운호,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 왈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2집, 2014 참조.

13) 왈저는 정의의 기준이란 각각의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롤즈가 주장하는 보편적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다원적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클 왈저(왈쩌), 정원섭 외 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1999.

14) 왈저는 『정의의 영역들』 제2장에서 성원권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성원권의 문제가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보다 근원적인 형태의 상호인정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건너뛰기로 하겠다.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 인정 개념을 토대로 이론적 기초를 전개하고자 하는 시도로는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박구용, 『우리 안의 타자 -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 현실사, 2003 참조.

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부조라고 하는 ‘외적 원칙’의 제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은 상호부조라는 외적 원칙에 따라 환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원칙은 인간 전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한 까닭에,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무는 공동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의무만큼 그렇게 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왈저는 이러한 상호부조라는 외적 원칙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¹⁵⁾

이미 합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별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성원권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왈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모든 거주자들을 기본적으로 시민 또는 적어도 잠재적인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개 열악한 업종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 이민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원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마치 종처럼 그들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왈저는 비판한다.¹⁶⁾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받아들인 이주자들에게 한편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법의 지배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전혀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왈저는 말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이러한 인정무시 또는 비승인의 태도는 결코 ‘정치적 정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국가의 법률체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시민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이방인의 지위에 묶어두고 억압과 착취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이방인들에 대한 지나친 압제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결코 정치적 정의와도 부합되지 않는다.¹⁷⁾

15) 왈저, 위의 책, 94쪽 이하 참조.

16) 왈저, 위의 책, 106쪽.

17) 왈저, 위의 책, 117쪽 참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치적 정의의 근본원칙은 무엇인가? 왈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내부의 삶을 이루는 자치의 과정들은 그 영토 안에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의 경제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¹⁸⁾ 이와 같은 정치적 정의는 특정한 개인들과 특정한 계급을 영원히 국외자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어떠한 국가도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각각 서로 상이한 지위를 고정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 시민들이라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 속에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들의 성원권도 동시에 확장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그 국가의 노동시장의 한계 안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앞에서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벤하비브는 인권과 주권이라는 두 개의 요소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중심으로 삼아 주권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론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전략은 보편적 규범의 차원을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왈저는 특수로부터 보편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조건 속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수로부터 보편으로 상향의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민주적 주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보편성을 실제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벤하비브는 왈저의 특수주의적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상대주의적 요소에 주목하여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에서 공동체주의자들이 민주적 반추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또 현실정치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쉽게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벤하비브의 비판은 매우 넓은 이론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포착한 것으로 보기는

18) 왈저, 위의 책, 118쪽.

어렵다.¹⁹⁾ 또 다른 공동체주의자인 테일러는 왈저와는 달리 특수주의적 방법론을 취하지 않고 상호인정이론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 형성에는 언제나 타자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회적 자아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잘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 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살펴본 왈저나 벤하비브와 같이 단지 정의의 문제로서 성원권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과 인정이론의 차원에서 성원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I. 환대의 권리를 둘러싼 문제

환대의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다루는 ‘성원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호인정, 성원권, 환대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일반적으로 환대란 나의 거주지에 찾아온 타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환대는 타인의 호소에 응답하여 자신의 문을 활짝 열고 타인을 나의 손님으로 맞이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경은 다음과 같이 환대를 말하고 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는 권리들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환대받음에 의해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²⁰⁾

이러한 환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실제 환대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각각의 철학적 입장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경우 크게 칸트와 데리다로 대표되는 두 입장이 눈에 띈다. 환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칸트 철학의 입장에서는 계약론적 상호성에 바탕을 둔 조건적 환대를 주장하고, 그에 반해 타자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데리다는 무조건적

19)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대해서는 스테판 물홀 외, 김해성 외 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아카데미, 2001, 70쪽 이하 참조.

20) 김현경, 위의 책, 207쪽.

환대의 개념을 주장한다. 칸트가 18세기말의 근대적 입장에서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환대를 주장하고 있다면, 데리다는 오늘날의 탈근대적 입장에서 칸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타자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주장하고 있다.²¹⁾

칸트가 말하는 환대의 권리는 1795년 『영구평화론』에 나온다.²²⁾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한 세계연방제를 제시함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영구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여기에서 공동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관계와 법적 관계에 집중하여 세계시민적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칸트가 파악하는 ‘세계시민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는 인격체이며 동시에 또한 한정된 지구의 표면을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인류임을 전제로 하여, 한 국가의 구성원이 문화, 종교, 인종의 장벽과 제약을 넘어서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환대 속에서 임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칸트의 주장은 세계시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구상의 추상성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비판은 헤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헤겔은 영구평화에 대한 칸트의 철학적 주장은 당시의 국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연상태로부터 시민상태로 이행하는 사회계약설의 이론적 구상을 그대로 국제관계에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³⁾ 한마디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관계에 적용된

21)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한병철은 『타자의 추방』에서 칸트의 환대 개념을 ‘무조건적인’ 환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가 더 이상의 칸트의 환대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증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병철, 이재영 역,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31쪽 이하 참조.

22)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1992; 임마누엘 칸트, 강영계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해』,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23) 헤겔은 그의 『법철학』 제333절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비판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G. W. F.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 한길사, 2008;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헌법의 무의식』, 도서출판b, 2017, 104쪽 이하 참조. 가라타니 고진은 헤겔의 비판에 대해 『영구평화론』보다 10년 전인 1784년에 칸트가 쓴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편사의 이념』을 끌어들이어 칸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가라타니 고진, 위의 책, 106쪽 이하 참조.

사회계약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겔의 주장은 그 당시의 세계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200년이 훨씬 더 지난 오늘날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가 전개됨에 따라 그 때와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오히려 칸트의 주장은 매우 높은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다.

칸트는 ‘환대의 권리’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국가들 사이의 영구평화에 관한 명문조항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 헌법은 공화주의적이어야 한다.” 둘째, “민족국가들의 법은 자유국가들의 연방 위에서 정초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시민권은 보편적 환대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조항에서 칸트는 환대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칸트는 여기에서 환대에 대해 “이것은 인류애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⁴⁾ 환대에 대한 칸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권리’를 다루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또 환대를 ‘인류애’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탁월한 통찰력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칸트는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 지점까지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지는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칸트가 말하는 권리로서의 환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환대가 단순히 내국인이 그 나라를 찾아온 이방인이나 자연적, 역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내국인의 친절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표할 수 있는 사교적 덕목이나 친절, 관용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우리가 세계공화국의 잠재적 참여자라는 관점을 취한다면, 환대는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이 환대의 권리는 각각 서로 다른 시민결사체에 속하면서도 경계지어진 서로의 공동체 변경에서 마주치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 환대의 권리는 각각의 정치체제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구성원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규제함으로써 환대의 권리는 시민적 공간을 나눈다. 그러므로 환대권은 인권과 시민권 사이의 공간, 즉 한편으로는 인격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다른 한편으

24)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1*,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tw 19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S. 213-214.

로는 우리가 특정한 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점에서 칸트는 철저하게 주권국가와 국가주의적 관점이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분명 칸트는 우리가 처한 ‘이주의 시대’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그렇지만 칸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환대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도착한 이방인이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를 몰락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평화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 굳이 그를 적대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영영 머물고자 하는 영주권이 아니다. 즉 본국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이방인에게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의에 기초하는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임시 체류권 내지 친교권이다. 지구를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타자의 존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갖는다.”²⁵⁾

칸트의 주장을 조금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환대의 권리를 갖는 것은 공처럼 둥근 지구 표면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환대의 권리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둥근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의 소유권이라는 물리공간적인 근거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환대권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지 않은 점에 그 이유가 있다. 칸트는 그의 철학적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끝없는 경쟁과정에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서로의 몰락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원리로서 환대의 권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상호인정의 결여가 칸트가 주장하는 환대의 권리에서 약한 고리를 이룬다.

환대의 권리와 관련하여 칸트는 구체적으로 영주권과 임시 체류권을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이주자의 정치적 성원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념 구별이기도 하다. 영주권은 자유롭게 선택된 특별한 동의에 의해 도덕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타자에게 마

25) Immanuel Kant, 위의 책, 213-214.

땅히 부여되어야 하는 것 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이를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 부른다. 그것은 공화적인 주권이 자신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활동하면서 제 각각의 정치적 실체를 반영하며 오랜 기간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특정한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특전이다. 환대권은 만약 이를 거부할 시 타자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거부당하지 않을 임시 거주권에 대한 요청을 수반한다. 종교 전쟁의 피해자, 해적이나 난파선의 피해자들에게 임시 체류를 거부하고, 또한 그런 거부가 그들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런 거부는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환대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칸트의 논의에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즉 사람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관계들이 과연 도덕적 의무의 요청 범위를 넘어서는 적선 행위까지도 수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관계들이 ‘타자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할 것에 대한 일정한 도덕적 요청을 수반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망명권이나 피난권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도덕적 모호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망명권이나 피난권이 우리가 함께 인류라는 데 기초한 상호적인 도덕적 의무라는 의미에서 ‘권리’인가? 아니면 이들 권리들이 법적 의미에서, 특히 개인이나 집단들이 주권적 민족국가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행위규범적 요청인가? 칸트는 이 점에 관해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²⁶⁾

물론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했던 시기는 오늘날의 이주사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 칸트가 살았던 18세기말은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칸트는 당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팽창 야욕에 반대하여 세계시민적 환대권을 주장하고, 동시에 영구평화를 위해 세계연방이라는 사고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권에 관한 칸트의 논의는 비록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대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통찰력만큼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칸트

26) 칸트의 환대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법이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지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난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현재의 난민법이 이와 같은 칸트의 자유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 세계시민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전략으로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구적 윤리를 찾는 많은 자유주의 진영의 학자들에게 커다란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러한 칸트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게는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칸트의 환대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IV. 환대권의 재구성 가능성

개인들의 상호적인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칸트의 환대 개념과는 달리,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의 개념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타자를 순수하게 맞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주체의 장소, 즉 ‘자기-집’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²⁷⁾ 절대적 환대의 법은 보편적 윤리라는 점에서 특정한 공동체의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조건적 환대의 법 및 권리와 구분된다. 조건적 환대 또는 ‘초대’의 환대는 타자가 우리의 규칙과 삶의 규범, 나아가 우리의 언어, 문화, 정치체제 등을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타자에게 환대를 제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 환대는 나의 영토에서의 순응을 조건으로 나의 공간으로 이방인을 ‘초대’하는 것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그러나 이러한 조건적 환대는 결국 스스로를 배반하게 되는 환대이다. 그 까닭은 첫째, 조건적 환대에서 환대의 주인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강한 집착을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이방인을 거부하는 자가 되거나 심지어 이방인을 혐오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둘째, 조건적 환대는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언어나 표현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약자, 이방인 또는 보이지 않는 타자, 다시 말해 대등한 계약의 권리 주체로 등장할 수 없는 타자를 배제하는 것을 은

27)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연중에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조건적 환대는 공동체 내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결국 주인의 관습과 법률 그리고 규약을 강요하고, 이방인의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언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조건적 환대는 기껏해야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들 사이에서 권력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관용’에 지나지 않는다. 데리다에 의하면, 관용은 권력자의 양보와 자비, 시혜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관용은 기껏해야 이방인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이방인과의 평화로운 실질적인 공존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관용의 정도, 다시 말해 ‘관용의 한계’에 대한 설정이 결국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일방적인 ‘자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관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소수자 또는 이방인 집단들은 계속해서 불평등한 수혜적 관계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 ‘방문’의 환대를 주장한다. 즉, 데리다는 진정한 환대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 이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 이념이 바로 무조건적 환대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리다가 말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는 신원을 묻지 않고, 또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환대를 말한다.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복수하지 않는 환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바로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를 특징짓는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가 현실 사회 속에서 실제로 실현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만약 보편적 윤리로서 무조건적 환대가 특정한 공동체의 법으로서 제도화될 수 없고 법제화될 수 없다면, 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자연스레 가해질 수밖에 없다. 칸트의 조건적 환대에 대한 반대의 대척점에서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의 개념은 비판에 내맡겨지게 된다. 물론 절대적 환대의 불가능성이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적인 환대는 이러한 불가능한 절대적 환대의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며, 이 불가능성과 관계 맺음으로써 스스로를 변형의 가능성 앞에 개방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28) 페넬로페 도이저,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 웅진지식하우스, 2005,

타자윤리와 타자철학에 기초한 환대 개념이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소수자와 약자의 지위에 놓인 타자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주사회에서 이주인권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주권적 시민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긴장관계를 낳는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인권과 특수적 주권의 충돌관계로 파악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인권과 주권의 문제 이외에도, 주체와 타자의 문제, 포함과 배제의 문제,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문제 등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이 고찰에서도 여전히 논의의 배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사회에서 이주자들의 구성원 자격 부여를 둘러싼 ‘성원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권리도 이와 맞물려 있다. 이론적인 접근방식에서는 비록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벤하비브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의로운 성원권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즉, 난민과 망명자들의 임시 입국에 대한 도덕적 요청을 인정하고, 이민자들에 대해 수용적 국경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적 박탈과 시민권의 강제적 몰수를 금해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어떤 지위의 정치적 성원인가와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소지하는 법적 인격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기본권 가운데 하나를 박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성원권은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의 경우 시민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일생 동안 외국인으로 처우하는 것은 인류 공동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이해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정치적 성원권의 관행은, 그 관점에서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구성과 실행 면에서는 투명해야 하며, 국가나 여타 준국가적 기관들에 의해 침해될 경우 정정 가능하여야 한다.”²⁹⁾

133쪽 참조.

29) 벤하비브, 위의 책, 25쪽 이하.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제관계에서의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개별국가는 과거와 같이 고립된 주권국가를 고집할 수 없다. 이주자에 대한 성원권과 환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상호인정관계에 기초한 ‘타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정이론의 토대 위에서 성원권, 환대의 권리, 타자의 권리가 새롭게 정초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칸트의 조건적 환대와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의 중간지점을 지나는 것이 될 것이다. 칸트와 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주체철학에 따르면 이방인에 대한 환대는 자유주의적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원주민의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허용되는 권리로 이해된다. 그에 반해 데리다와 같이 현대의 절대적인 타자철학에 따르면 환대란 나를 찾아온 타자의 자격과 신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호의를 베푸는 의식과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환대는 타자를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인격체로서 받아들이는 타자지향적 윤리로 이해된다. 전자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주체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타자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조건적 환대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무조건적 환대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대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는 이 지점에서 멈추고 있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어느 편에 기울어지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상호주관성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 이주사회에서의 환대권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앞으로의 과제는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호네트와 테일러의 인정이론 속에서 환대권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³⁰⁾ 또 그와 같이 재구성된 환대의 권리가 이주사회에서 이주인권의 보호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도구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다듬는 일이다.

30) 인정이론의 기초에 대해서는 김준수, 『승인이론』, 용의숲, 2015;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책, 2014; 악셀 호네트, 문성훈 외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 1994; Ludwig Siep, *Anerkennung als Prinzip der praktischen Philosophie*, Felix Meiner Verlag Hamburg, 2014 참조.

■ 참고문헌

- 고진, 가라타니, 조영일 역, 『헌법의 무의식』, 도서출판b, 2017.
- 김준수, 『승인이론』, 용의숲, 2015.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 데리다, J.,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 도이치, P., 변성찬 역, 『How To Read 데리다』, 웅진지식하우스, 2005.
- 롤즈, J.,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책, 2014.
- 물홀, S., 김해성 외 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아카데미, 2001.
- 박구용,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 현실사, 2003.
- 벤하비브, S.,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철학과현실사, 2008.
- 서운호,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 벤하비브의 논의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58집, 2014.
- 서운호,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 왈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2집, 2014.
- 왈저(왈쩌), M., 정원섭 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 현실사, 1999.
- 이철우,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제42집 1호, 2008.
- 최병두, 「이방인의 권리와 환대의 윤리」, 『문화역사지리』 제24권 3호, 2014.
- 카슬, S.,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 칸트, I.,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1992.
- 칸트, I., 강영계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해』, 지식올만드는지식, 2015.
- 프레이저, N./호네프, A., 김원식 외 역, 『분배냐, 인정이나?』, 사월의책, 2014.
- 하용삼, 「타자의 권리에 대한 민주적 반추」, 『로컬리티 인문학』 제4호, 2010.
- 한병철, 이재영 역,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 헤겔, G. W. F., 임석진 역, 『법철학』, 한길사, 2008.
- 호네프, A., 문성훈 외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호네프, A., 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 Kant, I.,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1,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tw 19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Siep, L., *Anerkennung als Prinzip der praktischen Philosophie. Untersuchungen zu Hegels Jenaer Philosophie des Geistes*, Freiburg/München, 1974.

Taylor, C.,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 1994.

❖ ABSTRACT

The Right to Hospitality in a Migration Society

Seo, Yunho
Konkuk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have caused our society to rapidly change to a 'migration societ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ransnational migrants in our society with a focus on the issue of 'hospitality' and treating migrants as guests from the owner's point of view, as well as the question: how will our society accept them? The crux of the questions asked from this standpoint is as follows: how should we treat those who have emerged as others in our society? What form should the norm of hospitality take in the new immigrant society that lies before us?

This question discusses the issue of hospitality to immigra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idents who have remained within their borders. However, this article raises different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bordered migrant society: Is it not possible to have 'the right to hospitality' that can be asser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migrants as 'the right of others'? Can hospitality be treated as a strong assertion and as a full right to protect oneself, as opposed to an incomplete right based on other people's good will and ethics? How does the right of hospitality relate to 'the right to membership', which is a matter of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in a society?

These are the main topics to be addressed. Firs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membership',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hospitality. Second, it reviews how the 'political membership' issue,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dealt with in terms of nationality or citizenship, is currently undergoing a change in the migrant society based on the discussion of Benhabib and Walzer. Then, through a discussion of Kant's conditional hospitality and Derrida's unconditional hospitality, we will consider how to deal with the

issue of 'hospitality' as a right and attempt to establish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inally, we will predict the possibility of the reconstruction of hospitality right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recognition.

Key Words : Migration Society, Hospitality, Membership, Theory of Recognition, Benhabib, Walzer, Kant, Derrida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